



도민이 중심
신뢰받는 의회

제42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
(제1차 교육위원회)
2025. 4. 22.(화) 10:00

검 토 보 고 서

충청북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교 육 위 원 회
수 석 전 문 위 원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: 이정범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○ 발의일자: 2025년 4월 11일

○ 회부일자: 2025년 4월 14일

3. 제안이유

- 「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」 개정(2023.9.27.)·시행(2024.3.28.) 사항을 반영하고, 인용법령이 혼재된 조문 등을 정비하여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함

4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 규정(안 제1조)
- 인용법령 조문 변경 및 명확한 용어 정의(안 제2조제6호)
- 교육활동 침해 관련 학생과 피해교원 분리 관련 혼재된 인용법령 및 조문 정비(안 제9조제1항제3호)
- 상위법에 근거하여 교육활동보호센터 업무 명확히 규정(안 제14조제1항)
-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비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조문 정비
 - 교육활동 침해 → 교육활동 침해행위
 - 교원법률지원단 →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(안 제14조제2항제4호)

5. 검토의견

가. 조례 제안이유 검토

- 2023년 9월 27일 개정된 「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」(2024.3.28. 시행)에 따르면,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및 피해교원의 심리적 회복 지원을 강화하고자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·개편하였음
- 한편, 본 조례 제9조제1항제3호는 「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」제2조제4호 및 「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」와 학교규칙에 따라 학교장과 교원이 조례 제8조제2항의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하는 학생에 대해 조언, 상담, 주의, 훈육, 훈계, 교권 침해 행위 학생과 교원 간 분리 및 분리조치된 학생에 대한 교육 방안 마련 등의 조치를 실효성 있게 취할 수 있는 생활지도 보장 방안을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
- 그러나 「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」에 따른 학생에 대한 조언, 상담, 주의, 훈육, 훈계, 분리조치 및 「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」에 따른 유아에 대한 조언, 상담, 주의, 훈육은 생활지도로서 교원지위법 제20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관련 학생과 피해교원의 분리와는 성격 및 근거법, 절차 등이 다른 별도의 제도이나 혼용되어 있음
- 이에,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혼재된 인용법령 및 조문 정비 등을 통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관련 업무 추진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본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

나. 주요내용 검토

- 안 제2조제6호는 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함

-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항변경을 반영하고, 안 제9조제1항제3호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에서 사용하는 “교육활동 침해 행위”의 정의를 명확히 한 것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
- 안 제9조제1항제3호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학생과 피해 교원 간 분리 및 분리조치된 학생에 대한 분리 교육 등에 관하여 규정함
 - 현행 조례 제9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「교원의 학생생활 지도에 관한 고시」에 따른 학생에 대한 조언, 상담, 주의, 훈육, 훈계, 분리조치 및 「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」에 따른 유아에 대한 조언, 상담, 주의, 훈육은 생활지도로써 교원 지위법 제20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관련 학생과 피해교원의 분리와는 성격 및 근거법, 절차 등이 다른 별도의 제도이나 혼용되어 있음
 - 단, 「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」 제16조는 학생 또는 보호자가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지위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, 「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」 제11조는 유아 또는 보호자가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지위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
 - 이에, 안 제2조제6호 “교육활동 침해행위”를 정의함에 있어 법 제19조에 해당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학생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규정하고, 안 제9조제1항제3호에 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학생과 피해 교원 간 분리 및 분리조치된 학생에 대한 분리 교육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한 것은 조례 해석 및 업무 처리과정에서의 혼란을 없앨 수

있는 타당한 조치라 사료됨

- 안 제14조는 교육활동보호센터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
 - 관련법령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및 피해교원의 심리적 회복 지원을 강화하고자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·개편한 바, 본 조례에서도 교원치유지원 센터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함

다. 종합 검토의견

-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인용법령이 혼재된 조문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, 상위법령에 맞춰 조례를 현행화하고 조례의 해석 및 업무 처리과정에서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은 조례의 실효성 및 업무추진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라는 점에서 본 조례 개정의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됨
- 또한, 법제처의 「법령 입안 및 심사 기준」과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비추어 볼 때, 전체적인 조문 체계와 내용상 법령에 위배 되는 사항이 없고, 담당부서 협의 및 조례안 예고 등의 입법 절차와 방법을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상 문제가 없음